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

1.	상호	(명칭)) :	고삼농업협조조합
----	----	------	-----	----------

2. 성명(대표자): 조합장 (생년월일: 1913년 46월 36일)

3. 주소(사업장소재지):

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252-4번지

(전화번호:)

4.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

가.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: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대체

나.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장용량: 저장시설:총3기 총용량:50,000.00 ℓ/분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 : 이중탱크설치.누출검사관설치

5.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내역

가. 방지시설의 종류: 이중탱크설치,탱크도장,누출검사관설치

나. 설치내용: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

6.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

[□] 해당 [□] 해당하지 않음 [■] 확인을 신청하지 않음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(변경)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06년 9월 8일

경기도 안성사장들

<변경 사항>

일	자	내 용	확	인

<참고사항>

일] 자	내 용	확	인

<저장시설>

시설명	오염물질	용량(단위)	수량(기)	완공일	시설형태
유류 저장시설	휘발유	10,000.00 ℓ	1		지하탱크
유류 저장시설	경유	20,000.00 l	1		지하탱크
유류 저장시설	경유	20,000.00 ℓ	1		지하탱크

<행정처분사항>

일	자	내 용	확	인